

인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53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53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9가단24245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진

변론 종결2022. 3. 31.

판결 선고2022. 5. 12.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9가단24245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67,86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7,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C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인천 서구 D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존속 중인 2017. 10. 2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위 건물 임대차계약은 2018. 1.경 해지되었다. C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위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원상회복 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원상회복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12,312,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보유하고 있다.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설사 위 증여 행위가 피고와 사이의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의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과다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 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 가) 원고는 2008. 4. 19.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인천 서구 D 건물

E, F,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차임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5. 19.부터 2013. 5. 19.까지1)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C은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건물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 5. 19.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그 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건물 임차 부분 원상회복 비용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C은 위 건물 임차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또는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2018. 2. 20.경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를 실시한 다음, 2018. 4. 5.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35324호로 원상회복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8. 'C은 원고에게 12,312,903원(미지급 차임 2,912,903원과 원상복구비용 43,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하고 수도계량기, 배수시설 등 복구비 1,4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 가) 피고는 2005. 11. 18.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2018. 10.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12. 12. 17.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17,630,000원에 분양받아 (H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을 재원으로)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2.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7.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7. 28.자로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I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2016. 8. 25.자로 채권최고액을 2,75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I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7. 11. 1.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 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행위일 무렵 C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상당액 46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I은행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37,971,483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들 및 수강생들에 대한 급여, 환불금 등 채무 약 50,000,000원, 피고의 부(父) L에 대한 차용금 채무 29,000,000원,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등 채무(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2017. 10. 20. 있었고,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2019. 2. 18.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C은 2017. 10. 2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 원상회복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원상회복 비용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가 2018. 2. 20.경부터 실제로 위 건물의 원상회복공사를 실시하고 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5, 6, 8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과 혼인하기 전2) 인 2005. 10. 13. P로부터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C 앞으로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J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의 위 J아파트 매수자금은 피고의 부(父) L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2008. 4. 28. 위 J아파트를 담보로 M은행에서 111,000,000원3) 을 대출받았고, C은 위 대출금으로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② C은 2012. 12. 17.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317,6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③ 피고와 C은 2015. 4. 6. N에게 위 J아파트를 20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17. N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M은행에 대한 위
- ①항 기재 대출 원리금 채무 106,997,323원(그중 원금은 106,832,626원)을 변제하고 N 앞으로 J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④ C은 2015. 6. 4. L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인천도시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잔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N으로부터 지급받은 J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L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일부4)를 변제하였다.
- ⑤ 인천도시공사는 2015. 7. 28.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7.자 매매를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위 부동산 분양대금 중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 등 대출액에 관하여 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⑥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6. 4. 22.경 M은행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O에게 지급하였는데, O은 같은 해 7월경부터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⑦ C은 피고와 혼인한 후 아이를 가지는 문제 등으로 시가(媳家)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피고와 이혼 얘기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가 O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화를 겪으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C이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돈 50,000,000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는 대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 ⑧ C은 2017. 10. 20.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91,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은행) M은행에서 24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7. 11. 1. C이 I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237,971,483원(2017. 10. 20.기준)(채권최고액 264,000,000원 및 2,75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은행)를 모두 변제하고5), 2017. 11. 27. M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은행)받아 같은 달 28.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⑨ 이 사건 처분행위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460,000,000원이다.

⑩ C은 협의이혼신고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다음, 2018. 12. 18.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이 피고와 혼인한 후 J아파트 및 이 사건 부동산 등 공동재산을 형성한 과정,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그 자금 출처, 피고가 C과 불화를 겪다가 투자금 문제로 다투면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C은 학원 운영난을 겪으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금전이 필요하였고, 이에 C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결국 피고와 C이 2018. 10.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점 등 이 사건 처분행위의 경위 및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C과 피고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기 약 1년 전에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와 C은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혼인재산을 분할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그 형식이 증여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재산분할로서 과대한 것인지 여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후 이혼이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이혼성립일에 생기는 이상 이를 전체적으로 이혼성립일에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보아 그 재산분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 및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아파트는 피고가 C과 혼인하기 전에 피고의 부(父) L의 자금으로 (피고와 C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C이 금전을 출재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C은

2005. 11. 1. 위 아파트를 담보로 M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6) 학원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후 C은 위 아파트 처분대금과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및 그 재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C은 혼인 생활 중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신혼 무렵에는 피고가 자주 이직하여 C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였으나 학원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그 무렵부터는 피고가 받은 급여를 생활비 및 C의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와 C의 이혼성립일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데, 그 시가 상당액은 약 500,000,000원 정도이다7) 8) (이 사건 처분행위일 기준 460,000,000원 정도). 한편 위 이혼성립일 기준 피고와 C의 소극재산으로는, ㉠ 위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3,000,000원(원금 기준, 피고가 M은행에서 대출받은 243,000,000원 및 50,000,000원9)), ㉡ C의 L에 대한 채무 2015. 6. 4.자 차용금 중 잔금 19,000,000원과 2016. 6. 29.자 차용금 10,000,000원(을 제2호증) 등 합계 29,000,000원, ㉢ C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등 채무 12,312,903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0) ㉣ 피고의 O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한 M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채무 60,000,000원 등 합계 394,312,903원이다11) C과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위 각 채무는 그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C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로서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1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와 C 사이에 분할 또는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적극재산 500,000,000원, 소극재산 394,312,903원, 차액 105,687,097원), 피고와 C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한 경위, 그 유지에 관한 피고와 C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 및 그 기간, 피고와 C이 위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을 이전받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설사 위 소극재산 계산 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 비용 등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운

판사권성우

판사원용일

별지

- 1) 이 사건 소장 중 계약서 발췌 부분에는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란에 '2008년 5월 1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 2013년 4월 19.일까지'라고 되어 있다. 다만, 인도일이 2008. 5. 19.인 점에 비추어 임대차기간의 종기로 되어 있는 2013. 4. 19.은 2013. 5. 19.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 2) 혼인신고일 이전을 의미한다.
- 3) 갑 제5호증(J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는 M은행에 채권최고액 13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5. 7. 17. 잔존 원리금 106,997,323원(그중 원금은 106,832,626원)을 상환하였다.
- 4) 피고와 C이 N에게 J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은 208,000,000원이고, 이후 피고가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M은행에 대한 채무 106,997,32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C이 L에게 변제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01,000,000원 정도이다(양도소득세 또는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을 고려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5) 갑 제10호증(I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과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 이후 실시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대한 방식에 의하여 2016. 8. 25.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50,000원)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2017. 10. 20. 기준 237,971,483원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가 2017. 11. 1. 은행에 대하여 변제한 채무는 채권최고액 2,75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4,000,000원 및 2,750,000원) 등기가 말소된 시기는 모두 2017. 11. 1.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6) 갑 제5호증

7) 갑 제11호증의 1 중 2019. 2.경 그래프 매물가격 범위 참조

8)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0,000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등 채무에 위 임차보증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부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9) 위 돈 50,000,000원은 피고가 2017. 11. 27. M은행에서 차용하여 C에게 지급한 것으로 C과 사이에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나, 이에 관하여 제1심 증인 C은 학원 정리(강사 퇴직금 등)에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당시 C은 동액 상당의 강사 퇴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받은 위 돈 또한 소극재산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10) 이혼성립일 무렵 원고와 C 사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원인 채무인 원상회복 비용 등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11) 을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O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반환채권은 그 회수가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1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